

하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하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7. 23.

하동군의회의회장 강 회 순

1. 조례명: 하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의용소방대 활동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범위 확대(안 제3조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0일(목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유무와 사유, 수정의견)
- 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 방법

- 1) 팩스: 055-880-2939
- 2) 하동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hdcl.go.kr>) 열린마당(의회에 바란다)
- 3) e-mail: star0208@korea.kr

붙임 1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하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: 하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(조항)	찬 성 여 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하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개최 등”을 “개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의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

제4조제2항 중 “통보하여야”를 “통보해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명하여야”를 “명해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 범위)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1. · 2. (생략) 3. 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대회 개최 등에 따른 비용 <u><신 설></u>	제3조(지원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 <u>개최</u> ----- 4. <u>그 밖의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</u>
제4조(지원절차 등) ① (생략)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, 「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<u>통보하여야</u> 한다.	제4조(지원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통보해야</u> ----- -----.
제5조(보고 · 검사 등)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「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<u>제출하여야</u> 한다. ② · ③ (생략)	제5조(보고 · 검사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출해야</u> ----- -----.
제6조(지방보조금의 반환) 군수는	제6조(지방보조금의 반환) -----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, 「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<u>명하여야</u> 한다. 1. ~ 3.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명해야</u>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--	---

하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·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하동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하동군 의용소방대(이하 “의용소방대”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제3조(지원 범위)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
2.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비용
3. 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비용
4. 그 밖의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

제4조(지원절차 등)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.

1.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

2. 사업계획서

3.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, 「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.

제5조(보고·검사 등)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「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사업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6조(지방보조금의 반환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, 「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.

1.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
2.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
3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
제7조(포상) 군수는 화재 진압 및 구조·구호, 화재 예방 활동 등에 현

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「하동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「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